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3년 11월 22일
미래·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3년 11월 10일

나. 제안자: 김성한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3년 11월 10일

라. 상정일자: 제300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의결(2023. 11. 22.)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박주선 의원)

제안이유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내용

가. 모유수유실 설치 장소 및 표지판 부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나.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모자보건법」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해당부서: 건강관리과

라. 기 타: 입법예고(2023. 11. 10. ~ 11. 14.) 결과 의견 없음

4. 전문위원 검토의견

(전문위원: 권오숙)

가. 제정취지

-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 증진과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 제정내용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모유수유실”이란 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이며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

○ 안 제3조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유수유실 설치·운영의 권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제3조(모유수유실 설치) 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
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3.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 안 제4조에서는 모유수유를 권장하여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국가, 시, 관련 민간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¹⁾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안 제6조에서는 실질적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지원과 구청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제6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인구보건복지협회: 인구변화대응 전문기관으로서 성 평등 관점에서 일·생활균형을 지향하며 대국민 홍보와 교육(수유시설 검색 사이트 연계, 수유시설 설치 물품지원, 수유시설 관리 표준 가이드라인 발행)

다. 종합의견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모유수유시설의 설치·운영과 그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친화적 분위기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소아과학회에서도 생후 6개월까지 모유만 먹이는 ‘완전모유수유’를 권장하는 등 모유수유의 장점은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 완전모유수유 비율은 감소하고 있고²⁾
- 모유수유시설은 수유 뿐만 아니라 기저귀를 교환이나 이유식 섭취 등 유·아동 외출 시 필수공간이나, 접근성이 떨어지거나 시설이 열악한 경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산모들이 모유수유를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직장 같은 공공장소의 수유실 설치’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재 우리구에는 33개소의 수유시설이 등록되어 있는데³⁾
- 2018년부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 전시장 및 동식물원],

2) 출처: 대한의학회 영문학술지(JKMS)에 발표된 「2010~2020년 국내 영유아 933명 대상 연구」, 완전모유수유 비율은 2010~2012년 42.8%에서 2019~2020년 13.1%로 급감

3) 출처: 수유정보 알리미(<https://sooyusil.com>) 기준(2023. 11. 10.) 전국 총 3,000개소

국가 및 지자체 청사 등에는 임산부와 영유아를 위한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 저출산 극복이라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통해 수유인프라를 구축하여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모유수유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 및 설치에 따른 상당한 비용이 수반되고, 공공기관 청사가 아닌 민간 시설은 권고 사항일 뿐 현실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워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임
- 또한 쾌적하고 안전한 수유 환경이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및 물품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

※ 붙임 관계 법령 1부.

참고

관련 조례 현황

연번	자치단체	법 규 명	비고
1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유수유확산을 위한 지원 조례	
2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3	전라남도 순천시	순천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전라북도 전주시	전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5	경기도 안양시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6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7	경상남도 창원시	창원시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8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0	경기도 군포시	군포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1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2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울특별시 금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특별시 용산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16	서울특별시 종량구	서울특별시 종량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17	인천광역시 계양구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18	대구광역시 달성군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모유수유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20	대구광역시 북구	대구광역시 북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21	부산광역시 서구	부산광역시 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3(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유수유시설 및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수유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홍보·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및 보건소는 모유수유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임산부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 모유수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하고, 임산부가 영유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임산부와 영유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